

애경케미칼(주)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2022. 12. 1.



제 1 조 (목적)

- ① 이 가이드라인은 애경케미칼 구매부문의 녹색구매활동을 정의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 조 1 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 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 15 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우수 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2 제 1 의 2 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인증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효율 표지 1-2 등급 제품, 에너지 절약 마크 인증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납, 수은, 카드뮴, 크롬, 석면, PCB 등 유해물질 저감 제품
 6. 포장단위 경량화, 리필 및 용기 회수 등 폐기물 저감 제품
 7. 해외 환경마크 인증제품
 8. 그 밖에 친환경성이 있다고 관계 부서장이 인정한 물품 (재사용·재활용·재이용이 용이한 제품,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 내구성이 큰 제품,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자원 소모를 줄인 제품, 생 분해되는 제품 등)
- ② '녹색구매'라 함은 제 1 호에서 정한 물품을 우선 구매함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①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본사, 공장, 국내 영업장 등의 범위에서 가능한 사업장을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② 구매대상 품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목, 건축, 전기, 화학, 설비, MRO(사무용품 및 소모품), 생활용품 등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
2. 사업장에서 제조 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제 4 조 (녹색구매 방침)

- ① 애경케미칼의 녹색구매는 연구, 생산, 판매, 물류 등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한다.
- ② 애경케미칼은 환경경영실천 강화를 위하여 녹색구매 해당 제품을 구매를 적극 권장하며,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집기·비품 등의 소모성 자재에 해당되는 일반 자재 관련 녹색구매 인증 제품 구매를 실천한다.
- ③ 애경케미칼 구매부문에서는 녹색구매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애경케미칼의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위한 녹색구매 활동을 선도한다.
- ④ 애경케미칼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물품 구매 시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녹색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1. 친환경 활동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녹색구매 품목 관리에 힘쓴다.
 2. 전사 구매 업무 중 일반 자재 구매 품목 대상 친환경성 향상에 항상 노력한다.
 3. 당사 친환경 구매 활성화를 친환경 자재 발굴 및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 ⑤ 사업계획 수립 시 녹색구매 대상 품목 관련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녹색구매 활성화를 적극 제안한다.

제 5 조 (파트너사의 책무)

- ① 물품계약시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등 친환경물품 해당 여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물품계약 후 공급물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 시 애경케미칼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공급 물품의 제조 시 환경영향 저감을 노력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애경케미칼이 요청하는 녹색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파트너사 지원)

- ① 회사의 녹색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최대 3년 이내 장기계약 체결
 - 2. 공급물품의 환경영향 저감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3. 녹색구매 및 환경경영활동 관련 교육 및 자문 우선 적용
 - 4. 그 밖에 구매부문장 또는 컴플라이언스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포상)

- ① 회사의 녹색구매 모범사례를 발굴, 성실히 이행한 부서나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녹색구매 공로가 큰 직원을 정부표창에 추천할 수 있다.

제 8 조 (평가 및 보상)

- ① 회사의 녹색구매 방침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목표와 연동시켜 관리한다.
- ② 회사는 녹색구매 관련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지침을 마련한다.

부칙(2022.12.1.)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